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 2. 2.
제안자 : 이 필 용 의원외

1. 수정이유

- 조례제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 혼용을 '협의회'로 통일하였으며
-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함
-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제3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 “회장·의장·위원장”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함(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 “분과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용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안 제2장의 제목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4조제1호중 “전략적 대응”을 “농동적 추진”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을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 항중 “민간대표회장”을 “민간대표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 중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으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 안 제7조중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를 “지역혁 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로 한다.
- 안 제8조제6호중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
- 안 제9조제3항중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 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장”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 협의회장”으로 한다.
- 안 제4장의 제목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를 “지방분권·행정혁신 협의회”로 한다.
- 안 제11조중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5장의 제목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삶의질향상협의회”로 한다.

안 제15조중 “향상을 위한”을 “향상에 관하여”로,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을”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추진단 운영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의 제목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동조 본문중 “협의회 및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9조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u>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경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신행경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p>
<p>제2조(구성원칙) 혁신발전협의회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혁신발전협의회</p> <p>제3조(설치)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현안 및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 2~3. (생략) 	<p>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충청북도발전협의회</p> <p>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능) 1. 농동적 추진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 2~3. (생략)</p>

제정안	수정안
<p>제5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고 도내의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민간대표회장은 도정혁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3. (생략)</p> <p>4. 지역혁신협의회의장, 지방분권·행정 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 위원장</p> <p>5. (생략)</p> <p>제6조(회의) ①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p> <p>② (생략)</p> <p>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p>	<p>제5조(구성 등) ①………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p> <p>………</p> <p>………</p> <p>②민간대표회장………</p> <p>………</p> <p>………</p> <p>③………</p> <p>………</p> <p>1~3. (생략)</p> <p>4.………,지방분권·행정 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p> <p>5. (생략)</p> <p>제6조(회의) ①………의장………</p> <p>………</p> <p>………의장………</p> <p>………</p> <p>………</p> <p>② (생략)</p> <p>③………협의회………</p> <p>………</p>
<p>제3장 지역혁신협의회</p> <p>제7조(설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장 지역혁신협의회</p> <p>제7조(설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p> <p>………</p> <p>………</p> <p>………</p>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1~5 (생 략)	1~5 (생 략)
6. 산업단지와 연계한 교통물류 등 <u>SOC 구축에 관한 사항 등</u>	6. 사회 간접자본에 관한 사항
7. <신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구성 등) ①~② (생 략)	제9조(구성 등) ①~② (생 략)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전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
④ (생 략)	④ (생 략)
제10조(회의) ①~③ (생 략)	제10조(회의) ①~③ (생 략)
제4장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제11조(설치)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 추진 및 도정의 혁신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충청북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기능) 협의회
1~6. (생 략)	1~6. (생 략)
제1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제정안	수정안
<p>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임기 및 회의) (생략)</p> <p>제5장 삶의질향상위원회</p> <p>제15조(설치) 복지 향상, 환경보존, 문화·관광자원 개발,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6. (생략)</p> <p>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임기 및 회의) (생략)</p>	<p>③ 협의회.....</p> <p>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p> <p>.....</p> <p>.....</p> <p>.....</p> <p>.....</p> <p>제14조(임기 및 회의) (생략)</p> <p>제5장 삶의질향상협의회</p> <p>제15조(설치)</p> <p>.....</p> <p>..... 향상에 관하여</p> <p>.....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6조(기능) 협의회</p> <p>.....</p> <p>1~6. (생략)</p> <p>제1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p> <p>의장</p> <p>② (생략)</p> <p>③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p> <p>.....</p> <p>..... 분과협의회</p> <p>.....</p> <p>.....</p> <p>제18조(임기 및 회의) (생략)</p>

